

「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증설) 민간투자사업(BTO-a)  
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증설) 민간투자사업(BTO-a)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 및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처리 효율 저하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임
-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증설) 민간투자사업(BTO-a)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시설 설치 경험과 소각시설의 유사 실적 및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증설) 민간투자사업(BTO-a)
- 추진근거 및 필요성
  - 1) 추진근거
  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   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
    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7조
    - 「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」(기획재정부 제2026-12호) 제2조 제49조, 제88조

2) 필 요 성: 유사 사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한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공공위탁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기술적 검토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
-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
-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, 실시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
-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
- 건설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

○ 위탁시설: 해당없음

○ 위탁기간: 2026년 ~ 준공시까지(2031년 준공예정)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: 4,257백만원(공사비 65,802백만원 기준)

(단위:백만원)

계	제3자 제안공고	제안서 평가	협상	경제성 검토	건설사업 관리	비고
4,257	-	170	362	207	3,518	

※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수수료 변경 가능

○ 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

○ 위탁구분: 신규위탁

**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증설) 민간투자사업(BTO-a) 개요**

- 위 치: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부지 내(산동읍 송백로 499일원)
- 사 업 비: 822억원 \*제3자 공고, 실시협약, 재원협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
[국174(21%), 도52(6.3%), 시122(14.8%), 원인자155(18.9%), 민간 319(39%)]
- 사 업 량: 소각시설 150톤/일, 발전시설 5MW, 주민편익시설 1식
- 공사기간: 33개월 (시운전 포함)
- 운영기간: 준공일로부터 20년

## 4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7조
- 「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(기획재정부 제2026-12호)」 제2조, 제49조, 제88조

### ○ 예산조치: 2026년 ~ 2031년 연차별 예산편성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생활폐기물 소각시설(중설)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, 실시협약 협상, 설계 경제성(VE) 검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전문기관에 공공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「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」에 따르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일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위탁의 법적 근거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 환경시설 민간투자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사업 진행 과정 중 최종 협상 결과의 확정 및 실시협약 체결 사항은 주무관청 책임인 바, 집행부서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 기능을 유지하고, 협약 조건 및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·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향후 협상 진행 상황과 사업비 변동 여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의 현황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